

이천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

소관부서 : 관광과

제정 2002· 7· 24 조례 제 422호
개정 2009· 1· 12 조례 제 742호
(제명개정 포함)
일부개정 2015· 9· 25 조례 제1165호
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한국도자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9· 1· 12, 2015· 9· 25>

제2조(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) 이천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제공모전 개최 및 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이천시(이하 “시”로 한다)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9· 1· 12, 2015· 9· 25>

제3조(공유재산의 대부)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. <개정 2009· 1· 12>

제4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. <개정 2009· 1· 12>

제5조(행정지원)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9· 1· 12>

제6조(권한의 위탁)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9· 1· 12, 2015· 9· 25>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· 9· 25>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적용) 이 조례는 법인이 해산되는 날까지 적용한다.

이천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

부칙 <2009·1·12 조례 제742호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규칙의 개정) 「이천시 도자기 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(재)세계도자기엑스포직원”을 “도자진흥재단직원”으로 한다.

부칙 <2015·9·25 조례 제116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